【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501호】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공고문 및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성주동 522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위 치	성산구 성주동 522번지 일원				
사 업 개 요	L형 측구 재설치 : 72m, 경계석 재설치 : 80m 투수블록 설치(200*200*60) : A=133㎡(L=93.0m, B=1.8 ~ 2.2m)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추 정 금 액 (A+B)	기 초 금 액(A)			도 급 자 관급자재 (B)	※ 관급자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9,750,000원	23,700,000원	21,545,455원	2,154,545원	6,050,000원	-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2.(목) 10:00 ~ 10. 27.(화) 10:00	2026. 10. 27.(화) 11:00	창원시 성산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5.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계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 리 비	품 질 관 리 비
4,118,902	366,741	277,565	-	36,472	357,522	3,080,602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마.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 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 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보증 가능하며, 직접 지급 합의 등의 경우 보증서 발급의무 면제 가능**)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문의사항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 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성산구 행정과	055-272-4043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성산구 안전건설과	055-272-4645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창원시 성산구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업체명 ○○ **대표이사** ○○○**(인)**

창원시 성산구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 성산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성산구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시 성산구 재무관 귀하